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서

순천향천안병원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병원장 : 김 영 석
건강관리과장 : 홍 중 관



○ 관 할 지 역

순천향 천안병원의 관할지역은 노동부 천안 지방사무소 구역으로 충남 천안시의 청원군, 연기군, 공주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아산군 등 7개군의 특수건강진단과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하고 있다.

○ 설 립 배 경

순천향 천안병원은 1982년 7월 1일 충남 서·북부지역 주만의 보건향상과 의료시혜를 목적으로 1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설립되어 동제단 순천향 구미병원과 함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550병상에 달한 충남도내에선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동병원은 순천향 대학 의학부 학생의 실습교육과 이지역 개업의사를 포함한 보건요원 보수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인력양성 및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당병원에서의 산업보건사업은 이지역 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1983.3.8 노동부로부터 천안관내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보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지 역 특 성

천안시 중소기업 시범공단을 포함하여 1개시 7개군에 약 1,500개 사업장과 48,000명의 근로자가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특징은 타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건강진단시 어려운 점이 다소 있으며 85년도 당병원에서는 62개 사업장의 3,979명의 특수검진과 17개 사업장의 작업환경의 측정을 실시하여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각 사업주 및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 감독관의 성의있는 활동과 년 1회 특수검진 세미나의 수시로 산업보건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 해마다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 **사업추진방향**

이 지역의 특징은 대규모의 4개 방적업체가 총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수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수검진 항목중 소음부문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직업성난청을 중점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광산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 산업보건연구소와 계속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강화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를 찾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의 역군으로서 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단순히 진단만으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근로자와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질병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당병원의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더욱 성실하고 성의있게 산업보건에 임할 방침이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 직원들과 이 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 **해 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해설

노동부 산업안전과 제공

第 5 章 補 則

第 40 條 (讓渡 등의 금지) 第 37 條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 또는 押留의 對象으로 할 수 없다.

第 41 條 (時效) 第 23 條 第 1 號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徵收할 權利와 第 37 條의 規定에 의한 慰勞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行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第 42 條 (申告) 事業主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이 때에는 事業主는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

타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43 條 (記錄의 보존) 事業主는 第 9 條 내지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의 記錄과 胸部엑스線寫眞 및 第 20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作業轉換措置指示와 처리결과에 관한 書類를 7 년간 保存하여야 한다.

第 44 條 (보고·출석 등의 義務) 事業主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第 45 條 (權限의 委任)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規